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 8. 24 선고 2020가단217320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성, 유병연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다영, 강주은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1. 6. 8.

판 결 선 고 2021. 8. 24.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 2020. 2. 5. 피고와 C 사이에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6,612,3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6,612,3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C 사이에 2020. 2. 5.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피고는 C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D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법원행정처,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원고는 C을 상대로 2017. 11. 24. 주식회사 E으로부터 양수한 2016. 5. 26.자 대출원리금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가소626913호 양수금 소송을 제기하여 2019. 2. 15. 위 법원으로부터 C으로 하여금 9,686,033원 및 그 중 7,948,007원에 대한 2018. 3.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7.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9. 3. 7.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C과 피고 사이의 상속재산 분할협의

-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던 F이 2018. 12. 30. 배우자인 피고와 자녀인 C, G을 두고 사망함에 따라 C은 이 사건 부동산 중 2/7 지분(이하 ‘이 사건 상속지분’이라고 한다)을 상속하게 되었다.
- 2) 그런데 C은 2020. 2. 5. 피고와 이 사건 상속지분을 피고의 소유로 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고 한다)를 하였고, 피고는 2020. 2. 5. 이 사건 상속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다. C의 재산상태와 상속재산의 가액 등

- 1) C은 2016. 9.경 F으로부터 48,000,000원을 증여받았고,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원고와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금융채무 등 소극재산만 있었을 뿐, 이 사건 상속지분 외의 다른 적극재산은 없었다.
- 2)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져 있던 채권최고액 60,000,000원, 채무자 F, 근저당권자 H 주식회사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는 이 사건 분할협의 직전인 2020. 1. 15.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말소되었는데, F의 사망 당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 액수는 9,356,948원이고,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152,500,000원이다.

2.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 1)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고, 이를 이전받은 사람이 악의가 없었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4다47016 판결 등 참조).
-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상속지분 외의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던 C이 유일한 재산이라고 할 이 사건 상속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한 이 사건 분할협이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 부족을 초래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C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 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 변제(2017. 8. 25. 30,339,534원, 2020. 1. 15. 8,204,134원)를 통한 피고의 기여분, C의 특별수익인 위 수증액 48,000,000원을 고려하면 C의 상속분은 전혀 없으므로, 이 사건 분할협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먼저, 기여분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기여분의 산정은 공동상속인들의 협의에 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고,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기여자의 신청에 의하여가정법원이 심판으로 이를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민법 제1008조의2 제2항), 이와 같은 방법으로 기여분이 결정되기 전에는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피고는 상속재산에 대한 자신의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는데(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2다55631 판결 등 참조), 갑 제8호증의 기재나 그 밖에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의 위 주장과 같은 기여분에 관한가정법원의 심판이나 공동상속인들의 협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한편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C의 위 수증액 48,000,000원을 피고의 주장과 같은 특별수익으로 보아 상속재산 가액에 가산하여 산정한 C의 구체적 상속분액이 6,612,300원에 이르러 C의 상속분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과 범위

1)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재산분할결과가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에도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범위는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할 것이나,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게 되면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의 가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한도에서 가액의 배상을 명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7다28819 판결 등 참고). 나아가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33734 판결 등 참조),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0864 판결 등 참조),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는 공동담보가액과 사해행위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의 피보전채권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사해행위인 계약 전부의 취소와 부동산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청구취지 속에는 일부 취소를 하여야 할 경우 그 일부 취소와 가액배상을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청구취지의 변경이 없더라도 바로 가액반환을 명할 수 있다(대법원 2001. 6. 12. 선고 99다20612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과 범위에 관하여 살펴본다.

먼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 사건 분할협의 직전 말소되었으나,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는 것이므로(민법 제1015조),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사해행위인 이 사건 분할협의 후 말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분할협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가액의 반환을 명하는 방법에 의함이 타당하다.

나아가 F의 사망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이 152,500,000원이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의 액수가 9,356,948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C의 위 수증액 48,000,000원이 상속재산 가액에 가산하여야 할 특별수익에 해당함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C의 구체적 상속분액은 6,612,300원[= (이 사건 부동산 가액 152,500,000원 + C의 특별수익액 48,000,000원 - 상속채무액 9,356,948원) × C의 법정상속분 2/7] - C의 특별수익액 48,000,000원, 원 미만은 버림]이 되고, 한편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액과 이 사건 상속지분의 공동담보가액이 위와 같은 C의 구체적 상속분액을 초과함은 계산상 명백하므로, 결국 이 사건 분할협의는 위 C의 위 구체적인 상속분액

6,612,300원에 미달하는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6,612,3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 소정의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추경준

부동산 목록

(1동의 건물의 표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빌라 동[도로명주소]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4층 다세대주택

1층 내지 4층 각 147.77㎡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대 778㎡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3층 호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68.87㎡

(대지권의 표시)

1 소유권대지권 7780분의 494 ㎡

